

심 의	제 2 회
년 월 일	2017. 5. 26.

##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안건

청렴시민감사관 회의

#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안건 목차

## 보고안건

<제1호> 2017년도 반부패·청렴 추진계획안 .....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심의안건

<제1호>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활성화 방안 등	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--

# 2017년도 반부패·청렴 추진계획(안)

---

2017. 5. 26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

# I 대내외 환경

## 1 2017년도 정책환경

### 대통령 말씀

- ◇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, **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약속이자 행동규범** (‘16. 10. 11, 국무회의)

###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사항

- ◇ 반부패 인프라 공고히 하는 한편, **법·제도 개선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**
- ◇ **공직사회 전반의 의식개혁**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
- ◇ **청렴 거버넌스 활성화**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하는 방안 추진
- ◇ **부패·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 추진**  
(‘17. 2. 8, 국민권익위원회 「2017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지침」)

-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률·제도 안착을 위한 규정 개선에 역량 집중
  -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청렴 행위기준을 강화하며 보완점 강구 중
- 공직사회 윤리의식 개선 요구 증가에 따른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
  -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이 높아지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→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
-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독려
  - 정부는 부패 척결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정책을 준수하도록 독려
  - ‘노블레스 오블리제’ 정신에 입각하여 공직 사회 내부 구성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활동 강구 필요

목 표

공직사회 반부패·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KITECH



추  
진  
과  
제

**1. 청렴생태계 조성**

- 1-1. 청렴정책 참여 확대
- 1-2. 청렴 거버넌스 운영

**2. 부패위험 제거 개선**

- 2-1. 부패취약분야 개선
- 2-2.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
- 2-3. 부패 행위 처벌 강화

**3. 청렴문화 정착**

- 3-1. 청탁금지 제도 운영
- 3-2. 청렴교육 내실화
- 3-3.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

**4. 청렴개선 효과 평가**

- 4-1.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

**5.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·확산**

- 5-1.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
- 5-2.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·확산

## 1

## 청렴생태계 조성

- ◇ 기관 고유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부패·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‘참여형 청렴 기관’ 창출

## 1-1. 청렴 정책 참여 확대

## 1-1-1. (단위과제①)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실천 강화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2 : ① “청렴리더십 강화”

-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의 생활화 위한 기관장 의지를 담은 ‘청렴메시지’ 제작 → 홈페이지·원내 업무포털(EIP) 통하여 홍보

- ▶ 외부 홈페이지에 기관장 「청렴 메시지」 팝업창 신설
- ▶ 원내 업무포털 “소통마당” 화면에 연구원장 「청렴 메시지」 상시 공지
- ▶ 게재 시기 : 年 2회
- ▶ 게재 내용 : 기관 고유 반부패·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선언문, 반부패 실천공약 등

- 공직사회 반부패·청렴 이슈에 대해 ‘기관장 청렴 서신’ 발송

- ▶ 발송 대상 : 쏘 직원
- ▶ 발송 시기 : 반기별 1회 이상 (年 2회)
- ▶ 서신 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안내, 부패방지 신고절차 등

## 1-1-2. (단위과제②) ‘반부패·청렴 TFT’ 구성 및 활동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2 : ② “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”

- 반부패·청렴 TFT 운영

- 본원 TFT (천안 본원)

: 기관차원의 청렴시책 세부 실천과제를 구성하고, 이행을 점검하여 개선·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 담당

- 지역별 TFT (全 연구소 및 지역본부)
  - : 본원의 청렴시책 방침 및 본원 TFT의 결정사항을 각 연구소·지역본부 별로 이행하고, 그 결과를 점검
- 개최시기 : 분기별 1회 (단위과제별 수시 운영)

### ○ 지역별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 간담회 실시

- 구 성 : 감사실장, 全 연구소·지역본부 사업지원실장
- 추진 내용

- ▶ 지역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대책 · 개선점 발굴
- ▶ 지역별 조직 구성원 청렴업무 참여방법 및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논의 구체화
- ▶ 반부패·청렴 관련 규정 등 개선
- ▶ 청렴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

- 개최시기 : 분기별 1회

## 1-1-3. (단위과제③) 청렴업무 관련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2 : ③ “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”

### ○ 「청렴활동 촉진지침」 제도 포상규정 개정

- 개정 사항 : 포상 자격, 인원, 시기, 사유, 항목 등 구체화
- 개정 시기 : ‘17년 10월 예정

### ○ 「청렴활동 촉진지침」에 따른 포상제 운영

- 자 격 : 기관의 반부패·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가장 큰 직원
- 포상내용 : 해외연수 기회 부여 검토 또는 기관장상 수여
- 포상시기 : ‘17년 11월 예정

## 1-2. 청렴 거버넌스 운영

### 1-2-1. (단위과제④)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3 : ① “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” , ② “청렴시민감사관 활동실적”

## ○ 청렴시민감사관 권한 및 직무범위 확대

- 청렴시민감사관 적극적 권한\* 부여를 위한 규정 개정

\* 시정권고, 감사요구, 자체감사 참여, 취약분야(연구관리·계약) 상시모니터링, 비리제보 등

## ○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 수립 및 활동

- 年 4회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부패·비위사실 등 점검
-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수용·반영
-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연간보고서 작성 →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

## 1-2-2. (단위과제⑤) 청렴 생태계 조성 위한 민·관 협력체 활동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3 : 가점사항 “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실적”

### ○ 산업별, 업종별, 지역별 민간단체와의 ‘청렴세상 캠페인’ 공동 주관

- 구 성 : 뿌리산업분야 비영리법인 등
- 캠페인 내용 : 우리 원 청탁금지법 운영 홍보, 지역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
- 시 기 : 수시 (지역 민간단체 행사시 공동추진)

### ○ 기술커뮤니티와의 협력활동 (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청렴 협력활동)

- 구 성 : 연구소/지역본부 부서장, 기술커뮤니티 대표 등
- 활 동 : 비영리 기술커뮤니티와 상시협력체 구성, 캠페인, 간담회 운영 등 반부패·청렴 활동 개시
- 시 기 : 수시

## 2

## 부패위험 제거 개선

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청렴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행동강령 내실화

### 2-1. 부패 취약분야 개선

## 2-1-1. (단위과제⑥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(14건) 이행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2-1 : ① “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”

- 제도개선 권고 내용에 부합하는 세부과제 추진
  - 방 법 : 개선과제 시행 후 내용·시기를 명시한 실적보고서 작성
  - 기대 효과 : 기관 특성에 맞게 과제 소화하여 반부패·청렴문화 창출
- 제도개선 세부과제 14개 과제 이행
  - 이행상황 수시점검, 필요시 이행실적 보고회 및 회의 개최
  - 완료 기한 : ‘17년 10월 (과제목록: 별첨2)

## 2-1-2. (단위과제⑦) 구매계약 부패척결을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1-2 : ② “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”

- 부당·부조리 ‘카이텍 민원콜’ 제도 시행
  - 방 법 : 기관 홈페이지에 “카이텍 민원콜” 배너 신설 → 계약이행 완료 후 만족도·청렴성 모니터링
  - 활 용 :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·부조리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추진
  - 시행시기 : ‘17년 10월부터 실시 예정
- 구매계약방식 전환을 통한 부패 위험성 사전 제거
  - 방 법 : 지역본부 구매계약 방법을 본원 통합 구매계약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
  - 시행 시기 : ‘17년 4월부터 실시

## 2-1-3. (단위과제⑧) 원규 자율개선 추진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2-1 : 가점사항 “사규 자율평가 개선” (공직유관단체)

- 사규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원규 개정 추진
  - 목 적 : 구매관련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
  - 개정 범위 : 구매관련 취약분야 등 관련 규정
  - 개정 시기 : ‘17년 8월 예정

- 부패영향평가 제도교육(국민권익위 주관) 이수
  - 참여 목적 : 원규 자율평가 역량 제고, 부패영향 평가기준별 검토요령 학습
  - 참여 대상 : 부패방지시책평가 담당자 및 원규 제·개정 담당자

## 2-2.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

### 2-2-1. (단위과제⑨) 정부방침과 기관의 반부패·청렴 제도 일체화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2-2 : ① “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”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(‘16.9.27) 내용 등 반영 : ‘17년 8월 완료
  - 정부 정책·방침을 기관의 행동강령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점검
  - 행동강령 기준·지침 변경 사항 모니터링, 반영

### 2-2-2. (단위과제⑩)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이행실태 점검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2-2 : ② “외부강의등 제도 운영”

- 외부강의등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및 결과보고
  - 점검 내용 :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여부 점검
  - 점검 대상/시기 : 전 직원 / 분기별 1회

### 2-2-3. (단위과제⑪) 연구원 자체 행동강령 위반 점검 실시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2-2 : ③ “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”

-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
  - 점검 시기 :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(명절, 하계휴가, 연말연시 등) (年 4회)
  - 점검 대상 : 전 연구소·지역본부

- 방 법

- ▶ 금품 수수, 품위유지의무 위반, 직무태만 여부 등 불시점검
- ▶ 필요시 연구원 재산 사적사용,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한 점검

## 2-3. 부패행위 처벌 강화

### 2-3-1. (단위과제⑫) 부패행위자 자체적발·처벌강화를 위한 노력 추진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2-3 : ① “부패행위자 자체 적발” ,② “부패행위자 처벌 강화”

○ 부패행위척결 위한 지도 점검 실시

- 방 법 : 금품 및 향응 수수,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 연구소/지역본부 부패행위 척결 위한 지도점검
- 시 기 : 수시

## 3

## 청렴문화 정착

◇ 고위직을 비롯한 전 직원의 자발적 청렴의지 제고 및 청렴교육 실시, 수범사례 확산으로 기관의 청렴역량 강화

## 3-1. 청탁금지 제도운영

### 3-1-1. (단위과제⑬)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 교육 실시

※ 관련 시책명가지표 3-1 : ① “청탁금지법 교육”

- 부정청탁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상시 교육시스템 구축
- 교육 대상 및 참여율 목표

구 분	간 부	직 원
대 상	부장, 그룹장, 실장 등 쏘 간부	일반직, 별정직 등 쏘 직원
참여율 목표	80% 이상	

○ 교육 시기 및 장소

- 시 기 : 年 1회 이상
- 장 소 : 각 연구소 및 지역본부 강당/세미나실 집합교육

3-1-2. (단위과제⑭) 청탁금지법 신고 체계 구축·활성화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1 : ② “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”

- 청탁금지법 신고 사무처리 규정 제정 : ‘17년 9월 예정
- 청탁방지담당관 지정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방지 위한 부패 신고절차 안내 : ‘17년 7월 예정
  - 외부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신고방법 안내 게재

- ▶ 홈페이지 주소 : <https://www.kitech.re.kr>
- ▶ 내 용 : 부정청탁 등 신고방법, 담당자 연락처 등 안내

3-1-3. (단위과제⑮) 공무수행사인의 현황조사 및 활용 공개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1 : ② “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”

- 추진 내용
  - 3개 연구소 및 7개 지역본부의 활용현황 조사
  - 공무수행사인 활용 현황 공개 (홈페이지에 공개)
  - 추진 시기 : ‘17년 8월 예정

3-1-4. (단위과제⑯) 청탁금지법 우수 제도개선·변화사례 발굴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1 : ③ “청탁금지법 우수 제도개선·변화사례”

-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우수 변화 사례 발굴
  - 지역본부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 사례 취합 : ‘17년 7월
  - 취합된 사례 중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우수 변화 사례 선정 : ‘17년 8월

- 우수 변화 사례 제출 : '17년 9월 예정

## 3-2. 청렴교육 내실화

### 3-2-1. (단위과제⑰)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2 : ① “청렴교육 강사 양성” , ② “청렴교육 강사 활용”

#### ○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의 추진

- 강사 양성 : 기관 정원규모 고려하여 2명 이상 양성 목표
- 강사 활용 (회당 2시간 강의)  
: 연구원 내 3개 연구소 강의 (3회 실시), 지역본부 통합 강의 (1회 실시)  
※ 업무일정 고려하여 내부강사 및 외부 전문강사 안배하여 활용

### 3-2-2. (단위과제⑱) 고위공직자(상임임원 이상) 청렴교육 적극 참여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2 : ③ “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”

- 교육 이수 목표 : 고위공직자 정원 대비 90% 이상 이수

## 3-3.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

### 3-3-1. (단위과제⑲) 「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」 제정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3 : ① “『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』 내실화”

#### ○ 『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』 참고, 지침 내실화

- 지침 상 공익신고 접수·처리, 법 개정사항 반영 : '17년 8월 완료

### 3-3-2. (단위과제⑳)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활동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3 : ② 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”, ③ 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”, ④ “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 설치”

#### ○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실시 (年 2회 이상)

- 대 상 : 직원 및 이해관계자(파트너기업 대표 등)
- 방 법 : 집합 교육 및 원내 업무포털(EIP)에 교육자료 게시

#### ○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공익신고 배너 설치

- 방 법 :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배너 게시,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, 연구원 자체 슬로건 공모, 원내 게시판 홍보 등
- 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배너 설치  
: ‘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’ 상시배너 설치·연계

### 3-3-3. (단위과제㉑) 부패신고 활성화 관련 활동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3 : ⑤ “부패신고 활성화 교육”, ⑥ “부패신고 활성화 홍보”

#### ○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 (年 1회 이상)

- 내용·방법 :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정수급 사례교육 (집합교육)
- 대 상 : 취약분야 업무담당자, 계약업체 관리부서, 복지업무 담당부서 등 잠재적 내부 신고자

※ 법정 의무교육 시, 부패신고 및 보호제도 교육 병행 실시

#### ○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

- 온라인 매체 : 원내 업무포털(EIP)을 통해 집중신고기간 안내
- 오프라인 매체 : 자체 행사 활용하여,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후 부패신고제도 홍보
- 홍보 대상 : 전직원 (온라인 매체 활용), 연구원 이해관계자 (오프라인 매체 활용)

### 3-3-4. (단위과제②) 채용결격사유 관련 규정 개선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3-3 : 가점사항 “공직유관단체의 정관, 인사규정 등 채용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규정 반영”

○ 부패방지법 제82조 의거,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개정 : ‘17년 9월 완료

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(비위면직자)는 공공기관,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. (부패방지법 제82조)

- 비위면직자 발생 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
- 임용 채용 예정자의 비위면직사실 확인 철저

## 4

### 청렴개선 효과

◇ 1년 간 수행한 청렴활동을 자체 평가하여 개선·보완할 점 모색

#### 4-1.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

##### 4-1-1. (단위과제③) 청렴활동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1 : ① “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”

- 시 기 : ‘17년 10월 예정
- 평가 내용
  - 부패공직자,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
  - 자체 고위직 평가, 행동강령숙지도 평가 등 결과
  - 기타 우리 연구원이 체감하는 과거대비 청렴분야 개선 내용 등
- 활 용 : 권익위 제출, 차기 반부패 청렴시책 수립 시 반영

#### 4-1-2. (단위과제 ㉔)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청렴도·부패방지시책 결과 공개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1-1 : ③ “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”

- 시 기 : 위원회 조사·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 게재(1개월 이상)
- 공개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우측하단 배너로 게재 (1회 클릭 접근)

## 5

###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·확산

- ◇ 공공기관 간 청렴 업무 우수사례 공유 및 타 기관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하여 반부패·청렴 조직문화 조기 달성

#### 5-1.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

##### 5-1-1. (단위과제 ㉕) 타 기관과의 청렴 협력활동 운영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2-1 : “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”

- 우수 공직유관기관과의 실무자급 2회 청렴 업무 컨설팅
- 공직유관기관과의 반부패·청렴 관련 우수자료 공유 5건 이상

#### 5-2.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·확산

##### 5-2-1. (단위과제 ㉖) 구매계약 부패척결 위한 계약시스템 개선

※ 관련 시책평가지표 2-2 : “반부패 시책 개발·운영”

- 구매계약방식 전환(대면계약 → 전자 계약)하여 부패위험성 사전 제거
  - 방 법 : 발주계획, 계약현황, 대가지급 현황 등 계약 전 과정 온라인화
  - 원규 개정 : 계약방식 변경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문화 (강제성 부여)
  - 완료 기한 : '17년 9월